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2014. 2. 18 입법예고)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有害性)·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3.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4. “신규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p>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분리중간체”란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분리중간체”란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3. “고분자화합물”이란 1종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각 분자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이며, 3개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며, 이러한 분자가 50% 이상이고,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를 초과하지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순물”이란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한다. 2. “부산물”이란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한다. 3. “노출평가”란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정성적 및 정량적인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하여 화학물질이 인체 또는 환경매체에 미치는 노출 수준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노출경로”란 화학물질이 배출원으로부터 인체 또는 환경에 노출될 때까지의 이동 매개체와 그 경로를 말한다.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p> <p>5.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 중에서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6.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7. “허가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수입·사용하도록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8.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유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9. “금지물질”이란 유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p>	<p>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중량비 2% 이하의 단량체를 제외한 고분자화합물이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분자화합물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p> <p>4. “단량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분자와 결합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하는 화학물질을 말하며, 반응물을 포함한다.</p> <p>5. “수평균분자량”이란 고분자화합물의 모든 분자의 총 무게를 총 몰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p>	<p>5. “화학물질의 전과정”이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판매, 보관·저장·운반, 사용 및 폐기단계까지를 말한다.</p> <p>6. “위해도”란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평가와 노출량에 의한 반응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의 노출에 의한 정량적인 유해성 수준을 말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10.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p> <p>11.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p> <p>12.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p> <p>13. “총칭명”(總稱名)이란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본래의 이름을 대체하여 명명한 이름을 말한다.</p> <p>14. “사업자”란 영업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 자를 말한다.</p> <p>15.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p> <p>가.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p> <p>나.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p> <p>16. “위해우려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제품 중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가.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 세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 등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p> <p>나.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과 같이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지해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p> <p>17. “하위사용자”란 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설립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 또는 소비자는 제외한다.</p> <p>18. “판매”란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 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p> <p>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p> <p>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p> <p>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p> <p>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p> <p>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p>		
<p>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가 생산·확보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화학물질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③ 국가는 제품 내에 함유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④ 국가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제4조(중소기업 지원사업)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의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 정보의 실태 2. 화학물질 정보의 거래 촉진 3.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관리기반 구축 4. 화학물질 등록의 이행 기반 구축 5. 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 6.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위해성 관리 7. 중소기업간 상호 협력 8.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및 대체기술의 개발·보급 9. 대체물질의 시장성 평가 및 시장 진입 지원 10. 우수 중소기업 업체 지정 및 모범 사례 11.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의 활용방안</p> <p>12.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 운영</p>
<p>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거나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의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교환·활용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용도·안정성 및 화학물질 노출 시 대응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등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사업자는 제품 내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5조(중소기업 지원업무의 위탁) ① 정부는 제4조에 따른 지원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녹색화학센터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관에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및 위해우려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을 하기 위한 방법 및 계획 2.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에 필요한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위해성 관련 조사·연구,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 또는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계 활동, 노동자 및 소비자 안전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①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량·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 	<p>제3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p>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모든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p> <p>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③ 위원이 결원된 경우 환경부장관은 결원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평가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 제품의 생산·수입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p>제5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의장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위원회</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간단체 관계자</p> <p>3.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p> <p>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해성평가위원회, 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 등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p> <p>1. 정기회의 : 반기별 1회</p> <p>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p> <p>③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p> <p>1. 회의 일시 및 장소</p> <p>2. 회의 목적과 안건</p> <p>3. 그 밖에 필요한 사항</p> <p>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p> <p>⑤ 평가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 또는 회의록, 회의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p> <p>⑥ 위원장은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⑦ 평가위원회는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여 위</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원장과 부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다음 보관하여야 한다.</p> <p>⑧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⑨ 평가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 2.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배부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4. 그 밖에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p>⑩ 제9항에 따른 사무국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p> <p>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해성평가위원회 2. 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 3.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 <p>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환경·보건·독성·경제·정책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 화학물질 및 제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화학·환경·보건·독성·경제·정책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평가위원회 위원이 추천하는 사람 <p>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그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p>제8조(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4. 그 밖에 조사용·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p>제7조(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법 제8조제2항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약 등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연구를 위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2.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화학물질 또는 제품·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나. 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다.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라.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상품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p>제6조(제조 등의 보고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의무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한 현황을 다음해 4월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지 않은 화학물질의 판매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상품의 명칭, 구매자, 확인된 함유성분, 용도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p> <p>③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 중에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3.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분리중간체 제8조(제조 등의 변경보고)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의 정보(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가 변경된 경우</p> <p>2.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p> <p>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는 별표 1에서 정한다.</p>	<p>1.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의 정보(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p> <p>2.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보고하려는 경우 그 선임된 자의 정보(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p> <p>3. 화학물질의 정보(명칭, 고유번호 등)</p> <p>4.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량</p> <p>5. 화학물질의 용도</p> <p>③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제2항에 따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첨부하여 보고를 할 수 있다.</p> <p>1. 수탁자의 정보(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p> <p>2. 위탁계약서 사본 등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p> <p>⑤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자란 해당 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p> <p>⑥ 제2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용도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와 그 구체적 용도를 말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⑦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누락 또는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수정,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보고서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제조 등의 변경보고방법 등) ①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8조제1호의 변경사항 :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 영 제8조제2호의 변경사항 : 변경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p>② 제1항에 따른 변경보고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8조(보고 및 변경보고 사항의 통보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보고 및 변경보고를 받은 경우 보고된 사항 및 변경사항에 대한 누락 또는 오류 등을 검토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9월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제9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9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고시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3년 마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2.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또는 위해성에 관한 정보 		<p>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따라 확보된 현황에 기초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에 따른 보고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통계조사 3.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및 위해성정보에 관하여 국내외에서 연구된 자료 4. 기타 환경부장관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전까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중에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할 후보물질 목록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10조제1항단서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는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즉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조량·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이라도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어진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9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p> <p>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한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한다.</p> <p>②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부여된 등록유예기간 만료일 전 2개월 동안 등록신청을 한 경우 등록유예기간은 제1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로 연장된다.</p>	<p>에는 해당 화학물질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 명칭 및 고유번호 2. 영 제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유예기간 3. 제출시험자료(제3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한함) <p>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방법 및 기간)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자의 정보(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 2. 위탁계약서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p>③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p> <p>④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 수입하려는 자란 등록할 시점의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조·수입 예정량이 1톤 이상인 자를 말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해당 화학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에 따른 유해, 위험성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유해, 위험성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3일 이내에 그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제11조(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등록신청자료가 모두 완전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다음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번호와 등록일을 부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등록신청자료를 추가·보완할 필요가 있어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추가·보완사항 및 제출기간을 기재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영 제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유</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예기간 만료일 전 2개월 동안 등록신청된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유예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제1호에서 정한 양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3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에 관하여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p> <p>⑤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출기간 이내에 추가·보완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등록 여부의 결정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2조(등록신청현황의 통보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등록신청현황 및 등록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등록신청현황 및 등록결과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3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다.</p>	<p>제10조(등록면제확인 대상)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면제확인대상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시약 등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연구를 위해</p>	<p>제13조(등록면제확인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작성·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1.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p> <p>2.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등록 면제 확인(이하 “등록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p> <p>② 등록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면제 확인의 기준 등 등록면제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연간단위로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그 화학물질</p> <p>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용으로 한번에 제조, 수입하려는 경우 그 화학물질</p> <p>가. 화학물질 또는 제품·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p> <p>나. 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p> <p>다.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p> <p>라.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상품의 시범 생산을 위한 경우</p> <p>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을 처음 제조, 수입하려는 경우 그 화학물질</p> <p>가. 수평균분자량이 10,000 이상인 고분자로서 1,000 미만의 분자의 함량이 5%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 미만인 고분자화합물</p> <p>나. 수평균분자량이 1,000 이상에서 10,000미만인 고분자로서 분자량이 1,000 미만이 분자의 함량이 25%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 미만인 고분자화합물</p> <p>4.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기본물질과 기본물질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적으로 표면 처리된 화학물질을 처음 제조, 수입하려는 경우 그 화학물질</p> <p>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 중에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면제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및 제조·수입 예정량</p> <p>2. 등록면제확인 대상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p> <p>3. 영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화학물질의 분류(보유한 경우에 한함), 안전관리계획서, 이동·이송계획서 및 사후처리계획서</p> <p>② 제1항에 따라 첨부되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p> <p>③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대상 및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p> <p>1.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의한 검토</p> <p>2. 현장 방문을 통한 사실확인</p> <p>④제1항제3호에 따른 사후처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해당용도로 제조, 수입한 화학물질에 대한 처리결과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4조(등록면제확인 신청 결과의 통지 등) ① 협회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협회의 장은 등록면제확인의 신청현황 및 통지결과를 분기별로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그 현황 및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1.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다만, 고체상태로만 사용되며, 물에 녹지않거나 분산되지 않는 고분자화합물의 경우를 제외함)</p> <p>2. 유해화학물질, 에폭시화합물, 아지리딘화합물 또는 신규화학물질인 단량체가 중량비 2%초과하여 포함된 수평균분자량이 10,000 미만 고분자화합물</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외의 세부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p>	<p>③ 협회의 장은 등록면제확인외에 관한 전년도 실적은 매년 3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2조(변경등록·변경신고 등) ①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1.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수입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p> <p>2. 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p> <p>②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등록자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변경등록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를 추가·변경한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현장확인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1.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변경사항 :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p> <p>2.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변경사항 : 변경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p> <p>3. 법 제1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변경사항 : 변경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③ 변경등록 여부의 결정 및 통지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변경등록 사유)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간 제조량·수입량이 변경된 경우”라 함은 연간 제조량·수입량이 별표 2에서 정한 톤수 범위에서 보다 상위의 톤수 범위로 변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p> <p>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 당시와 달리 영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용도분류체계에서 변화가 있는 경우 2. 등록 당시와 달리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롭게 확인된 경우 <p>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이 변경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 당시와 달리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변화를 주는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등록 당시와 달리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와 관련하여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p>제17조(변경신고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3일 이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 통지를 받은 시점 이후부터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제13조(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통지받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제 대상임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없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의 중지,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11조(등록의무 불이행한 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화학물질의 파기 2. 등록의무 이행계획의 보고 3. 등록의무 불이행 사실에 대한 공개 <p>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결과를 통보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p>	
<p>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 자료)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p>제12조(등록신청시 제출 자료의 생략)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2에서 정한 양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2. 제2조제2호에 따른 분리중간체 3.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미만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구조 활성 관계 예측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해 	<p>제18조(등록신청자료의 세부적인 내용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모든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자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p> <p>3. 화학물질의 용도</p> <p>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p> <p>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p> <p>6. 화학물질의 유해성</p> <p>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험성(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p> <p>8.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보호구, 폭발·화재·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p> <p>9.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p> <p>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내 시험기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환경부령에 따라 확인된 외국 시험기관 <p>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의 내용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시험계획서”라 한다)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험계획서의 시</p>	<p>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p> <p>4. 국제적으로 검증되어 인정되는 시험관 내 시험방법으로 얻은 결과로부터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p> <p>5. 구조가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p> <p>6. 기술적으로 시험이 불가능한 화학물질</p> <p>7. 법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에 근거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p>	<p>2.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그선임된자의 정보(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p> <p>3. 대표자의 정보(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p> <p>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고유번호, 상품명 순도(%) 확인된 불순물·부산물의 명칭 및 함량 <p>④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용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화학물질의 용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화학물질의 용도 <p>⑤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내용은 별표 3에서 정한다.</p> <p>⑥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는 별표 4에서 정한 톤수 범위에 따른 시험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는 해당 화학물질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고시하면서 정한 시</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정성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제조자·수입자에게 시험의 구체적 내용, 자료의 제출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적인 내용,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방법, 제1항제7호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 시험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험자료에 따른다.</p> <p>⑦ 제6항에 따른 시험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 및 절차 등을 가공하지 않고 시험결과를 기술한 시험자료의 전문(全文) 2. 시험결과에 대한 심사·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가 기술된 것으로서 시험자료 전문을 최소화하여 시험의 목적, 방법, 결과·결론을 요약한 시험요약서 <p>⑧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는 화학물질의 사용 전과정에서 노출시나리오에 따른 유해성평가, 노출평가 및 안전성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구체적 작성방법은 별표 5에서 정한다.</p> <p>⑨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 기술항목은 별표 6에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2.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3. 누출시 방제요령 4. 적절한 폐기방법 5.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제정보 6. 보호구 착용 및 응급조치사항 등기타 안전사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용 지침</p> <p>⑩ 법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제조, 수입예정량, 별표 7에서 정한 화학물질의 사용용도와 관련한 노출 정보(노출경로 및 노출형태 등)를 말한다.</p> <p>⑪ 제6항에 따라 시험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 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p> <p>제19조(국내 시험기관 등이 실시한 시험자료)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별표 8에서 정한 시험자료를 말한다.</p> <p>제20조(외국 시험기관 확인)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외국 시험기관이 실시한 제18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발급한 인증서 2. 외국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기준의 준수 <p>제21조(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①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가 법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자료 중에서 별표 8에서 정한 시험자료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자료를 대체하여 시험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험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자료의 명칭 2. 법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으로서 시험 수행 예정인 국내 시험기관명 3. 시험의 구체적 방법 4. 시험의 구체적 일정 5. 시험자료 제출 가능일 <p>제22조(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험계획서에 대한 내용 및 일정 등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계획서의 내용에 추가·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자료의 제출 마감일자 2. 시험조건이나 방법 3. 추가·보완이 필요한 시험의 내용 <p>② 제1항에 따라 시험계획서의 검토결과를 통지 받은 제조자·수입자는 그 결과에 따라 제출 마감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해당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제출 마감일까지 시험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제조자·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현장확인 등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을</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p> <p>제23조(등록신청자료의 생략범위 등) ① 영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등록신청자료를 제조·수입자가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p> <p>②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분리중간체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등록신청자료를 제조·수입자가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p> <p>③ 영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영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험자료 중 해당 시험자료</p> <p>2. 영 제1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 별표 8에서 정한 시험자료 중 해당 시험자료</p> <p>④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및 3호서식의 신청서에 생략하고자 하는 등록신청자료와 영 제12조에 해당함으로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제15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	제13조(개별제출 사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제24조(공동 등록신청자료)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신청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예기간 이내에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 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상업적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②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및 개별제출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등록신청하려는 자들간에 이견이 해결될 수 없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일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출하려는 시험자료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차이가 있는 경우 2. 시험자료의 소유자가 공정하고 명확한 비용의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p>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2.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험계획서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이 모두 합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포함하여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험성 2.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p>제25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절차 및 방법)</p> <p>① 동일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들로서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신청할 시점에서 연간으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가장 많은 양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대표자는 동일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들과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출할 시험자료의 선택·생산에 관한 업무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2. 등록신청자료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업무</p> <p>3. 기타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p> <p>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의 선택·생산은 시험항목별로 하나의 시험자료여야 한다.</p> <p>④ 등록신청자료 제출에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자들의 수와 제조·수입량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분담되어야 한다.</p> <p>⑤ 동일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등록신청하려는 자들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기에 앞서 대표자에 의해 제24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를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6조(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미리 협회의 장의 개별제출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개별제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협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제출된 경우 대표자의 면담 또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개별제출확인 소견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른 등록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p> <p>②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화학물질이 등록되었는지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 시에 제2항에 따른 개별제출확인 소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7조(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활용할 수 있는 등록신청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2.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 <p>제28조(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여부를 문의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문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결과를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등록 여부를 문의한 자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일한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 2. 동일한 화학물질이 등록된 경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내용 <p>가.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한 자의 정보, 등록신청자료의 제출내역(척추동물시험자료 포함)</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나. 해당 화학물질 등록 여부를 문의하였던 자에 대한 정보</p> <p>제29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소유자에게 공정하고 명확한 비용 근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과 동시에 제공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제공받으려는 자들은 소유자와 합의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균등하게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 시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등록신청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7조(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2항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등록신청자료로 제출된 자료로서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p>	<p>제14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사유) 법 제17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p>	<p>제30조(척추동물시험자료 제출기간)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척추동물 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이란 해당 시험자료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해당 자료의 제출명령시 통지한 기간을 말한다.</p> <p>제31조(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 ①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는 자는 미리 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거부한 자는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사용부동의 입증자료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협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제출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사용부동의확인 소견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 시에 제2항에 따른 사용부동의확인 소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그밖에 척추동물시험자료의 공동활용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p>제18조(유해성심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자에게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및 결과의 통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p>		<p>제32조(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시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 적정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9와 같다.</p> <p>제33조(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1조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날부터 유해성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유해성심사의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제34조에 따른 제출명령시부터 자료가 제출되기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신규화학물질 : 6개월 이내 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 1년 이내</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심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심사를 마친 후 유해성심사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조제5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해·위험성 조치사항 통보서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등록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3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4조(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명령)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직접 기간을 정하여 유해성심사에 필요한</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자료가 추가·보완될 필요가 있는 경우 2. 등록된 화학물질의 사용용도 및 노출정보를 토대로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인정되어 관련 유해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영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누적량이 1톤을 초과하는 경우 4. 등록된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등록된 화학물질이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의 방해·저해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6. 등록된 화학물질이 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고시된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되는 경우 7. 제18조제7항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 전문이 필요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p>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은 구체적 사유와 제출기간 등을 정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간은 해당 자료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기간이어야 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19조(유해성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를 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회원국과 공동으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2. 국제협약에 이행을 위해 시급하게 유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화학물질 3.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 수입하는 화학물질 4. 영 제1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화학물질로서 유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화학물질 5. 화학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유해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화학물질 6. 국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긴급하게 유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화학물질 	<p>제35조(유해성평가의 방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15조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유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성평가가 시급한 경우에는 다른 화학물질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 제조·수입량 및 수출량 2. 화학물질의 유해성 여부 3. 국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 등 <p>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함에 있어 국내 또는 외국의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의 방법은 제3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평가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6월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6조(사용승인 방법 및 취소)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용승인 요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성평가</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결과의 사용승인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목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외국의 법령 및 제도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 등에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사용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해당 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p> <p>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자에게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p> <p>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성평가 결과를 승인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 2. 유해성평가 결과를 승인을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p>⑥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의 방법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유독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독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마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면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화학물질이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고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법 제21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에는 해당 화학물질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독물질 해당 여부 2. 화학물질의 고유번호 3.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5. 화학물질의 주요 유해성에 관한 결과 6. 그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함께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	제17조(연구기관)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제38조(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유해성심사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하려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시설 현황 명세서와 운영 현황 명세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출받은 신청서 및 자료를 검토하여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지정서를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변경지정의 기준·절차와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물」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p> <p>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p> <p>6.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인정된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p>	<p>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p> <p>③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 2. 시험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 3. 시험분야 또는 세부 시험항목 <p>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시험기관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변경지정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지정서를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p> <p>⑤ 법 제22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한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9조(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 후 2년마다 그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내용 및 시험결과의 적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22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관리기준에 관</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둔</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평가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3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p>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p> <p>3.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p> <p>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p> <p>④ 제2항에 따라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1.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p> <p>2. 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p> <p>②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자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p>	<p>제18조(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p> <p>2.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 또는 하위사용자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적절히 통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관리대책의 수</p>	<p>제41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시 제출되는 자료가 화학물질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충분한지 검토를 하여야 한다.</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을 선정할 수 있다.</p> <p>1. 화학물질의 국내 제조·수입량</p> <p>2. 화학물질의 유해성</p> <p>3. 화학물질의 사용용도 및 사용형태</p> <p>4.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강 또는 환경의 피해 발생 우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립 또는 그 이행</p> <p>2.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에 대하여 위해성 관리방법의 권고</p> <p>3. 기타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p>	<p>위해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1.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제12조에 따른 변경 등록시 제출되는 자료</p> <p>2. 기타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알려진 국내외 정보</p> <p>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1. 위해성평가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p> <p>2. 위해성평가 기간</p> <p>3. 인간의 건강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특성의 평가</p> <p>4.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평가</p> <p>5. 노출 평가</p> <p>6. 위해도</p> <p>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위해성평가 보고서에 대하여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의 선정 등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p> <p>제42조(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명령)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직접 필요한 자료를 제</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자료가 추가 또는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경우 2. 등록된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용도 2.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 3.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4. 법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사용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노출경로 및 노출형태) 5. 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에 관한 정보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구체적 사유와 제출기간 등을 정한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명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간은 해당 자료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기간이어야 한다.</p> <p>제43조(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1조에 따라 실시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영 제18조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p> <p>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수입·사용 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허가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람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2.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3. 제1호 및 제2호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허가물질의 명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 및 허가유예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허가유예기간) ①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여되는 허가유예기간은 허가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용도, 제조·사용주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은 허가물질이 지정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제조·사용주기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0조(허가물질의 지정기준) ① 허가물질의 지정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제7조제1호에 따른 용도는 제외한다</p> <p>② 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른 허가물질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제21조(허가물질의 지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거나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의 지정 및 허가유예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로 지정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서와 사회경제성분석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여</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금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및 고유번호 2. 분류 및 표시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 4. 허가유예기간 	
<p>제26조(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허가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2. 신기술의 상용화(常用化)로 허가물질을 사용하여도 위해성이 없게 되는 경우 3. 허가물질의 위해성이 없다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p>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한물질 또</p>	<p>제22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고시) ① 법 제27조에 지정하려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은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대체기술 등 대체 가능성 여부와 사회·경제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는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제기구 등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제협약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4. 제26조제1호의 사유로 지정 해제된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지정예정 시기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명칭, 용도에 따른 금지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및 제한의 특정 용도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서와 사회경제성 분석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및 고유번호 2. 분류 및 표시 3. 유해성 및 위해성 4. 제한, 금지되는 용도 및 내용 5. 제한 또는 금지 사유 	
<p>제2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물질</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기술의 상용화로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하여도 위해성이 없게 되는 경우 2.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위해성이 없다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p>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p>		
<p>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양도자가 동일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최초로 양도할 때에만 제공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정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p>		<p>제44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내용)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제공자의 성명 또는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2. 상품명,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총칭명), 등록번호(신규화학물질은 생략 가능), 고유번호 3. 분류·표시 4.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5.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 유해성 정보 6. 노출시나리오 및 위해성저감대책 등 위해성 정보 7.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 함유량 등 정보 8.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시 대처방법, 누출시 방제요령, 보호구,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업장에서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9.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정보</p> <p>②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으로서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 보호법」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1항의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4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제44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위해성정보에 관한 내용을 첨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화학물질안전정보의 구체적 작성방법 및 제공방법에 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p> <p>제46조(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경우</p> <p>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위해성정보가 확인된 경우</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3.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새로운 사용용도가 확인된 경우</p> <p>4. 유해화학물질 지정의 새로운 규제 정보가 확인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에 관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받은 자가 정보제공과 관련된 의무를 승계한다.</p>
<p>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 등의 보고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사용·판매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판매량, 안전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제조량·수입량, 안전사용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p>		<p>제47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내용)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정보는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위사용자·판매자의 상호 또는 성명 2.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총칭명) 및 상품명 3. 사용량·판매량 3. 화학물질의 구체적 사용용도 4. 화학물질의 노출정보 5.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여부에 관한 정보 6.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조치한 내용 <p>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정보는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총칭명) 및 상품명 3. 제조량·수입량 4.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5. 취급방법, 화재시 대처방법, 누출시 방제요령 보호구, 폐기방법 등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6.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보 7.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정보 <p>③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으로서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 보호법」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공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p> <p>제48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p> <p>②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상대방이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제31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환경부장관은 제29조와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p>		<p>제49조(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방법과 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하기 위하여 제29조·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제공 대상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한 자와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3.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경우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2. 법 제21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3.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법 제25조에 따른 허가물질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4. 법 제26조에 따른 허가물질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해제
<p>제6장 위해우려제품의 관리</p>		
<p>제32조(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생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p>		<p>제50조(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요건) ①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함유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기 전까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총량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생산·수입하는 함유제품에</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고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신고 면제 확인(이하 “신고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을 생산·수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을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2. 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p>③ 신고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사용된 개별 유해화학물질의 전체 사용량을 총합으로 산정한 결과가 1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은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중량 비율이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경우에 한한다.</p> <p>제51조(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내용 및 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자 정보(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 2.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려는 경우 그 선임된 자의 정보 (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 3. 제품에 관한 정보(제품·상품명, 용량, 사용설명서 등) 4.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명칭, 함량(확인된 불순물·부산물을 포함한다) 5.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알려진 분류 및 유해성정보 6.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용도(기능) 7. 제품의 용도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제출된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p> <p>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위태성평가에 활용되기 위하여 신고의 현황 및 확인증발급결과를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⑤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3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52조(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 확인)</p> <p>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32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한 경우를 말한다.</p> <p>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신고면제확인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신고면제확</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국립환경과학원장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한다.</p> <p>④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법 제33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에 활용되기 위하여 신고면제확인의 신청현황 및 확인증발급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⑤ 협회의 장은 신고면제확인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3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3조(제품의 위해성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국내외에서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위해우려제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게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위해성평가와 관련한 전문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해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p>		<p>제53조(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중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품목별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생산·수입·사용 등을 규제하고 있는 제품 2.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에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 3.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위해성평가를 요청한 제품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제품 <p>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를 위하여 제품을 생산·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無償)으로 수거(收去)하게 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p> <p>4.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제품</p> <p>5. 기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제품</p> <p>②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과정을 거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 특성 등에 따라 따로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 2.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인체·환경에 대한 노출 허용량의 산출 3.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인체·환경에 대한 노출량 및 노출정도 평가 4. 위해도 5. 안전·표시기준의 설정 방향 <p>③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 등록 및 변경등록,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에 따라 확보한 유해화학물질의 정보 2. 제품의 유해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 결과 <p>④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긴급하게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기구 및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서 평가한 위해성 결정결과 준용 또는 인용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2. 위해도의 결정이 어려울 경우 유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 및 노출평가만으로 위해도 예측</p> <p>3. 함유제품의 노출에 따른 사망 등의 위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만으로 위해도 예측</p> <p>4. 노출평가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경우 활용한 가능한 과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노출평가 실시</p> <p>5. 특정집단에 노출가능성이 클 경우 어린이 및 임산부 등 민간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위해성평가 실시</p> <p>⑤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p> <p>제54조(위해성평가 시기·절차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2년마다 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 품목별로 위해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를 하여야 할 대상 제품이 많은 경우에는 위해성 정도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3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법 제7조 제6항에 따른 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34조(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완료된 경우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에는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거나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용기 또는 포장으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포함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정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우려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3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제3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양수하는 자</p>		<p>제5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고(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고면제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품을 양도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30조를 준용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1. 제품명</p> <p>2.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량</p> <p>3.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p> <p>4.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p> <p>5. 노출시 대처방법 등 취급시 주의사항</p> <p>② 제품의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제1항 각 호의 정보와 같다.</p> <p>③ 함유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으로서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 보호법」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1항의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4조에 따라 고시된 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p> <p>제5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p> <p>① 법 제35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제품을 양도하기 전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보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양도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정보의 내용은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 또는 신고면제확인을 받은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정보는 제품의 소비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별지</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3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34조에 따라 고시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의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 내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32호서식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p> <p>제57조(미고시 위해우려제품 함유물질에 대한 자료제출)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제품은 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고시된 위해우려제품 중에서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을 말한다.</p> <p>②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품목을 생산·수입하기 전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승인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제출자료 등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자료의 승인방법 및 승인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7조(회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기준·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을 판매·증여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p>		<p>제58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명령(이하 “회수 등의 조치명령”라 한다)은 해당 위해우려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회수 등의</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제조자·생산자·수입자 등에게 명할 수 있다.</p>		<p>조치명령을 하기 전에 조치명령 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 등의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위해우려제품의 명칭, 거래업체명, 생산량·수입량 및 판매량 2. 회수계획량(위해우려제품으로 판명될 당시 해당 제품의 소비자에 대한 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 3. 회수 및 판매금지 등의 사유 4. 회수방법 5. 회수사유 6. 회수방법, 기간 및 예상 소요기간 7. 제품의 회수장소 및 폐기 등 처리방법 8. 회수 및 판매금지 등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없이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위해우려제품을 회수 등의 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해우려제품의 생산량·수입량 및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2. 미회수량에 대한 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제7장 보칙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38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 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거나 제조·생산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제조·생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의 보고 2.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 3. 제32조에 따른 신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p>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23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법 제38조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신청 3. 법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변경신고 4. 법제15조에 따른 개별제출의 확인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여부의 문의 6. 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부동의 확인 7.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8.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9.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면제확인 신청 10. 법 제35조에 따른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정보제공 11. 법제36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 표시기준 미고시 위해우려제품의 생산, 수입의 승인 12.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보호의 신청 	<p>제59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p> <p>① 국외제조·생산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지식 2. 화학물질 정보 관리에 관한 3년 이상의 업무 실적 <p>② 선임된 자는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의 정보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국외제조·생산자의 정보 4.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사본) <p>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p> <p>④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⑤ 국외제조·생산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수입자에게 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사본과 법 제38조에 따른 업무 수행결과를 통지해야 한다.</p>
<p>제39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수입하고 있거나 제조·생산·수입하려는 자가 제8조에 따른 제조 등의 보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제32조에 따른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처리업무) ①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에 따른 제조 등의 보고 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확인 4.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변경 신고 5.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6. 법 제32조에 따른 함유제품의 신고 및 면제 확인 7. 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 8.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9.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 <p>② 제1항의 업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자는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각종 서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또는 파일첨부의 방식으로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화학물질 정보처</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적 진행에 동의하여야 한다.</p> <p>제25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의한 업무처리 등) ①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제조·생산·수입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웹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 도구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형태의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p> <p>③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하여서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p> <p>제26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정보처리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화학물질정보처리센터는 외국의 유사 시스템과 조화를 보장하기 위해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추가적인 개발에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협력할 수 있다.</p>	
<p>제4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녹색화학센터로 지정</p>	<p>제27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p>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p>	<p>제6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신청)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제1항의 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 평가와 관련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2.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 평가, 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低減) 및 예방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3. 산업계의 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 활동과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p>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화학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위해성 저감 및 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p>제28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시설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규 전문인력 8명 이상을 보유할 것 3. 최근 2년간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p>제29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4호에 따른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및 일정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계획 및 일정 2. 지정 요건 3. 비용 지원계획 	<p>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 분야 2. 기관 내 별도 조직 및 정규인력 현황 3.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 등의 확보 현황 4. 최근 2년간 녹색화학 분야 업무 실적 및 근거 자료 5. 녹색화학센터 지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제3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화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적절한 규모의 지원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2. 신규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국내 개발 3. 친환경 화학물질 및 제품의 개발 4.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하는 물질 또는 대체기술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개발</p> <p>② 녹색화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녹색화학센터의 사업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2월 말일까지 2.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다음 해 3월 31일까지 <p>③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평가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p> <p>④ 녹색화학센터의 구체적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p>	
<p>제41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화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4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 경우 3.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p>	<p>제31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7조제2항에 평가 결과 업무실적이 크게 부진한 경우 2. 제37조제2항에 평가 결과 기관의 성격상 녹색화학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3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로 정한다.</p> <p>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일반인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제6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 명칭 및 고유번호 2.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 2.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3.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 여부 4.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결과 5.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결과 6. 취급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
<p>제43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 5.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 6. 제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 		<p>제62조(출입·검사) ① 법 제43조에 따른 출입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2.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의 위해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화학물질의 보고·등록의무, 등록면제확인 또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의무 등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경우 5.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 자료가 자료보호를 요청할 수준으로 적절하게 관리되는 지를 확인할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를 위탁받은 자</p> <p>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필요가 있는 경우</p> <p>②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 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 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 입·검사 3.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 입·검사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 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 검사 6.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7.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 입·검사 <p>제63조(검사기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 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p>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를 한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를 한 자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6. 제36조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 내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자 		<p>제64조(서류의 기록·보존) 법 제44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현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일체를 5년간(제9호의 경우 영 제33조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산정한다)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외제조·생산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과 관련된 자료 2. 법 제8조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와 관련된 자료 3.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과 관련된 서류(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과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 4.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과 관련된 자료 5.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와 관련한 자료 6.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과 관련한 자료 7.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 8. 법 제29조, 제30조, 35조에 따라 정보제공한 자료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45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제36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 보호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3조(자료보호기간)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이란 15년을 말한다.</p> <p>제34조(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의 상용명칭 또는 상품명, 제품의 명칭 2. 화학물질의 사용용도, 제품의 용도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취급시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등 화학물질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4. 제품의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사고발생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6.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7.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8.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9.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 	<p>9. 법 제45조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된 자료</p> <p>② 제1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p>제65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의 보호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 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2. 보호대상 자료 <p>②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p>
<p>제4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신고료 하거나 또는 확인·승인을 받으려는</p>		<p>제66조(수수료) ①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1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른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p>
<p>제47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23조 및 제41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의 접수 또는 등록 여부의 결정·통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험계획서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험방법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의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명령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8.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및 결과의 통지</p> <p>9.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p> <p>11.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p> <p>10.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p> <p>1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p> <p>1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p> <p>13. 법 제31조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p> <p>14. 법 제33조에 따른 제품의 위해성평가</p> <p>1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의 접수</p> <p>16. 법 제42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p> <p>17.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또는 출입·검사 등</p> <p>18.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된 자료에 관한 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또는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p> <p>19.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 신고의 접수</p> <p>20.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제조 등의 보고 또는 변경사항의 보고의 접수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의 접수 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 내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제출의 접수 및 승인 5.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 명령 또는 응급조치 명령 6.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의 접수 7. 법 제43조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또는 출입·검사 등 8.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에 관한 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또는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9.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소재지·대표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의 확인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 사실의 확인 4.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 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의 접수 6. 협회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에 관한 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또는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제7장 벌칙		
<p>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의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한 자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안전기준·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제품을 생산·수입한 자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한 자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한 자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 		
<p>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를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포함한다) 제11조를 위반하여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면제확인을 받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제18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4.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면제확인을 받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한 자		
<p>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p> <p>2.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p> <p>3.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p>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1.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p> <p>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제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3.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p> <p>4.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5. 제44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정할 수 있다.</p>	
부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p> <p>1.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0톤 이상인 경우: 2015년 1월 1일</p> <p>2.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70톤 이상인 경우: 2017년 1월 1일</p> <p>3.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50톤 이상인 경우: 2018년 1월 1일</p> <p>4.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20톤 이상인 경우: 2019년 1월 1일</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절차) ① 법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p>1.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 2015년 6월 30일</p> <p>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경우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시 제출 서류 등) ① 영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p> <p>2. 당해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p> <p>3. 이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용도</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p>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5.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 2020년 1월 1일</p> <p>제2조(유독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유독물질 및 취급제한물질·취급금지물질은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27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p> <p>제3조(화학물질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는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자가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4조(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5조(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으로 본다.</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조(유해성심사 등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로서 법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제10조에 따른 등록의 기간을 유예한다.</p> <p>제4조(자율안전확인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면제확인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신고 또는 신고면제확인의 기간을 유예한다.</p> <p>제5조(자료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자료보호 중에 있는 자료는 법 제45조에 따라 자료보호기간 동안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p>	<p>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및 용도 2.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내용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때에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다.</p>		